# 2016년도 졸업생 졸업사정 및 시상 기준

전주부설초등학교

# 1. 목적

당해연도 6학년 기간 중, 초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의 그 동안의학습활동 및 생활태도를 평가함에 있어, 기존의 학력위주의 방법을 벗어나 인간교육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인성과 예절, 봉사 등의 전인교육적인 면으로 개선하여 올바른인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과, 졸업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방침

- 가. 본 계획은 2016학년도 졸업생 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시행한다.
- 나. 전주부설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, 시상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사기를 고양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성취동기를 부여한다.
- 다. 수상 대상자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상의 취지를 알리도록 한다.
- 라. 특별한 자격이나 공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시상하는 것은 지양한다.
- 마. 수여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순위로 선정된 학생의 순서대로 포상한다.
- 바. 대상아동은 졸업 사정 기준일(2016년 12월 23일)을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하는 아동 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.
- 사. 청소년 단체와 관련한 표창 및 기타 수익자 부담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시상은 개별 단체에서 별도 관리하고, 본 졸업생 성적 사정과 연계하지 않는다.
- 아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시상에서 제외한다.

# 3. 시상 세부계획

#### 가. 졸업사정위원회 조직

- 1) 구성: 교감(위원장), 교무부장(부위원장), 6학년 담임(위원)
- 2) 임무 : 성적 및 포상 사정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의를 한다.
- 3) 임기 : 당해연도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#### 나. 평정 원칙

1)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(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교과외적인 요소, 학교에의 공헌도와 기여도, 자기의 특기사항 등)

- 2)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 영역을 계량화, 점수화하여 평가한다.
- 3) 교사의 교육자적 소양과 도덕적 양심을 바탕으로 엄정성을 기하며, 학부모의 학교 에서의 직책이나 학교발전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평정에서 일절 배제하여 순수하게 아동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.
- 4) 당해 년도 자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가 1회일 때는 해당 평가의 학년 평균으로 평정하며, 2회 이상일 때는 성적사정에 서 제외한다.
- 5) 전입생의 경우 교과평가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의 학년 평균을 반영하여 평정하고 각종 수상실적, 자치활동 경력은 전입 이후의 실적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.
- 6) 동점자가 있을 경우,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순으로 한다.

### 다. 영역별 졸업 사정 작성 기준

영역		기준
1) 성장평가 (100점 상한)		자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한 평가로 1학기와 2학기 성적사정평가 총 2회 평가 점수를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다. ① 1학기 성적사정평가 50%, 2학기 성적사정평가 50%로 환산한다. ② 환산한 점수를 합산(100%)하여 지필평가 점수로 한다. (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냄)
2)생활 평가 (20점 상한)	2-1) 수상 실적	① 교내 표창장(선행상, 봉사상 등)은 1회 1점으로 하여 1년간 받은 상장을 합산한다. ② 교내 대회상은 1위 3점, 2위 2점, 3위 1점으로 한다. ③ 교외상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직할기관(대통령, 총리 및 장관, 전주교육 대학교총장, 교육감, 교육장, 도지사, 시장)에서 발행한 상을 인정한다. ④ 교외상: 대통령(1위 8점, 2위 7점, 3위 6점), 총리(1위 7점, 2위 6점, 3위 5점), 장관(1위 5점, 2위 4점, 3위 3점), 총장(1위 4점, 2위 3점, 3위 2점), 교육감(1위 4점, 2위 3점, 3위 2점), 교육감(1위 4점, 2위 3점, 3위 2점), 교육강(1위 4점, 2위 3점, 3위 2점), 교육장(1위 3점, 2위 2점, 3위 1점), 시장(1위 3점, 2위 2점, 3위 1점) ⑤ 교외 표창장은 상장의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.
	2-2) 자치 활동	당해연도 전교회장 5점, 전교부회장 4점, 학급회장 3점, 학급부회장 2점을 부여한다.
	2-3) 봉사 실적	① 학교 행사 운영에 봉사한 관현악부(국악), 중창단, 색소폰부, 방송부, 또 래상담자 학생으로 당해 년도 활동한 학생은 봉사 점수 1년 1점을 부여한다. ② 국악관현악에 2016학년도 활동한 학생은 봉사 점수 1년 0.5점을 부여한다. ③ 2개 이상의 활동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활동만을 인정한다.

#### 라. 수상자 결정 방법

- 1) 영역별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매긴다.
- 2) 수상자 결정

영 역	기준
가) 총장 표창	졸업사정 최우수 학생 (1명)
나) 학교장 표창	졸업사정 결과에서 가) 영역 대상자를 제외한 각 반 최우수자 (3명)
다) 학교운영위원장 표창	졸업사정 결과 각 반 나) 영역 대상자 다음 순위자 (3명)
라) 학부모회장 표창	졸업사정 결과 각 반 다) 영역 대상자 다음 순위자 (3명)
마) 학교교육발전협의회장 표창	졸업사정 결과 각 반 라) 영역 대상자 다음 순위자 (3명)
바) 6개년 개근, 정근상	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 의하여 해당하는 학생 전원 ① 6년 개근: 6년 동안 결석, 지각, 조퇴 등 결석이 한 번 도 없이 출석한 자 ② 6년 정근: 결석이 3회 이하인 자(지각, 조퇴 3회까지는 결석 1회로 간주함)
사) 공로상	전교어린이회 회장단 (4명)
아) 꿈바라기상	영역별로 전학생에게 수여(학교교육과정)
자) 기타 교외상	<ol> <li>졸업 사정 결과 총장 표창, 학교장 표창, 학교운영위원장 표창, 학부모회장 표창, 학교교육발전협의회장 표창 대상 자를 제외한 차 순위자를 추천한다.</li> <li>추천 순위는 학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(담임의 의견을 참조함)</li> <li>추천자수가 3명 미만인 외부상은 반별 차 순위자 중 졸업 사정 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추천한다.</li> </ol>

#### 마. 기타

- 1) 총장 및 학교장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재학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, 학교 운영위원장상~학교발전협의회장상은 6학년 졸업사정평가 중 1회 이상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
- 2) 각종 교외상의 경우 시상자가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갖춘 어린이로 선정하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본 사정 자료에 의하여 시상함
- 3) 점수가 같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위 부분 점수 우수자를 우선함 (교과평가 > 수상실적 > 자치활동 > 봉사실적 순으로)
- 4) 졸업생 시상 규정 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

### 4. 장학금 수여 계획

#### 가. 목적

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봉사정신이 남달리 강하여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.

### 나. 방침

- 1)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에서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며, 특별한 기준이 없을 시 본교의 자체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.
- 2) 가정형편이 어려움(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)에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.
- 3) 가정형편이 어려움은 구체적 자료(동사무소 조사 자료 등)를 기준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(구체적 자료가 없지만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) 에는 담임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다.
- 4) 장학금의 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수보다 많을 경우 졸업사정위원회 협의에서 결정한다.
- 5) 수여기관의 수에 따라 학급별 3-4명씩 기준에 따라 평정기준과 담임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추천순위를 정한다.
- 6) 졸업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평정기준표를 준거로 선정한다.
- 7) 감사의 편지를 통한 보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수 지도한다.

#### 다. 장학금 후보자 평정 기준표

순위	구분	用卫
1	가정환경	・소년소녀가장, 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 ・특별한 경우 담임 추천서 가능
2	담임교사 추천	·다자녀 학생을 우선으로 추천하되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
제외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	

# 5. 기대 효과

- 가. 시상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사기를 고양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 한 성취동기를 부여
- 나. 수상 대상자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상의 취지를 알림
- 다.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

# 6. 시행규칙

- 가. 본 졸업 성적 사정 기준은 2016학년도 졸업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나. 사정 결과 동점일 경우는 교과평가〉수상실적〉자치활동 〉봉사실적 순으로 사 정하고, 위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생년월일 연소자를 우선 한다.
- 다. 규정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라.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교무부장이 보관한다.